자원봉사자 인권교육

부산진구노인복지관

1. 인권의 정의와 특성

인권
'인간의 권리'

'자유와 평등'으로표상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침해될 수 없고
양도될 수 없는 권리

오늘날 인권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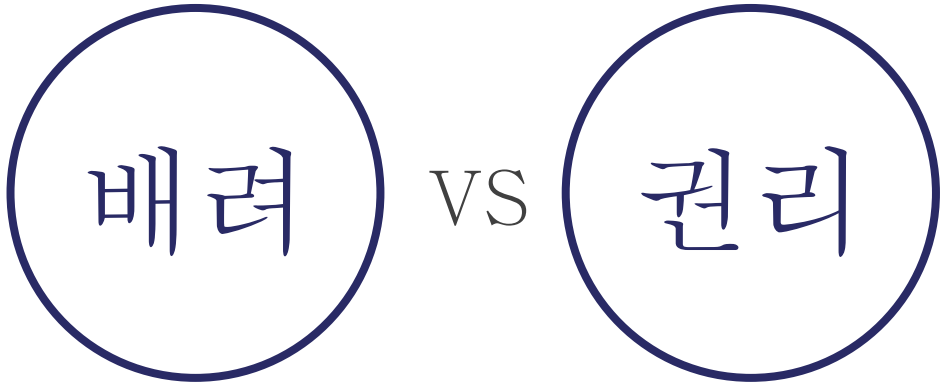
인권은 권리의 개념에 종속하는 것

인권은 도덕적 권리

모든 도덕적 권리가 다 인권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님

1. 인권의 정의와 특성

인권은 권리로서 요구하고 보장되어야 하며, 도덕적 배려에 의해 실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권은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이자 공동체를 위한 의무로서 규정될 필요가 있다.



- 배려 :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줌.
- 권리 :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

2.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

어린이를 위한 약속, 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은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입국을 보유한 조약이다. 이 조약에서는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아동으로 규정하며, 아동에게 최상 의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인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가입,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권리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다.

2.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

노인 인권을 이야기하다 – 노인을 위한 UN원칙

노인을 위한 UN원칙은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UN원칙은 노인의 존엄성 보호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노인은 자신 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학대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언급해 각종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노인 자신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

장애 인권의 원칙 –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권리에 기초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정당한 소유자이자 주체자로 본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접근성, 이동권, 고용, 교육,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등 총 50개 조항에 걸쳐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차이 vs 차별

차이와 차별의 정의

차이 :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차별 :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세계인권선언은 제 1조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제2조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종류의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19가지의 차별 사유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또는 가족형태,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4. 평등권 실현을 위한 노력

인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두 축인 자유와 평등은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필수불가결하다. 자유를 무시한 평등, 평등 없는 자유 모두 불완전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자유가 생명의 유지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이 라면 평등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그러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가치이자 원리이다.

인권의 역사는 보다 많은 자유를 쟁취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를 통한 평등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의 평등권 관련 조항

- 제 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의무·평생교육진흥) 제1항, 제32조(근로의 권리·의무, 최저임금제, 여자·연소자보호,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회 우선) 제4항,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모성보호, 국민보건보호) 제1항에서도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 제41조(국회의 구성) 제1항, 제67조(대통령의 선거, 피선거권) 제1항, 제116조(선거운동, 선거경비) 제1항에서는 평등선거와 균등한 기회 보장을 확인하고 있다.

5. 인권 존중 실천을 위한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이란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그림1>에 비해 <그림2>는 역동성이 느껴진다.

달리 표현하면 <그림1>은 <그림2>에 비해 수동성이 강해, 장애인은 누군가 휠체어를 밀어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수동형 인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반면에 <그림2>에서 는 수동적인 장애인보다는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장애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6.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점의 변화와 실천방법

역지사지가 시작이다

인권감수성 훈련을 위한 기본 태도에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있다. 타인의 입장에서 처지를 생각해보는 관점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인권감수성을 일상적 민감성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인권'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무엇이 인권인지를 알아야 일상적 민감성과 인권감수성을 구별할 수 있다. 인권감수성 훈련이 단지 '가슴'에서만 머물지 않고 '머리'가 필요한 이유다.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인권감수성은 우리 사회의 주류보다는 비주류, 사회적 소수자,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에게 시선을 돌릴 때 좀 더 향상될 수 있다.
소수자의 '소수'는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아니다. 소수는 차별 등 인권침해에 노출될 여지가 많은 특정 집단을 얘기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 고용인과 피고용인, 성인과 아동 등 권력 관계가 형성돼 타인이 불편한 상황은 아닌지, 타인의 처지를 제대로 바라봤는지, 내 행동이 인권의 어떤 영역에 해당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피고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

인권감수성은 정서의 영역이다

인권감수성은 공감을 넘어 실천을 지향하며, 서정을 넘어 서사를 지향한다. 인권감수성은 사람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려는 이들에게 있어 작지만 소중한 첫 걸음이다.

7. 기타 안내사항

인권 침해사례 발생시 해결방안

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http://www.humanrights.go.kr) →
상담·진정·민원 클릭 →
진정·민원신청 또는 방문상담 / 모바일 웹 상담

2.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31'